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99
----------	-----

2018년 11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18년 10월 17일
- 다. 회부일 : 2018년 10월 29일
- 라. 상정일 : 제28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11월 21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재무국장 하철승)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의 유효기간이 '18.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신설 감면조항을 추가하는 등 조례 전반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되 감면대상별로 감면기간을 개별적으로 규정(안 제3조~제5조, 제7조,~제11조)
- 2)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조항 신설(안 제2조)
- 3)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이 상위법령에 따라 '18. 12.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율에 관한 규정 삭제(현행 제3조)

- 4) 도시정비사업 감면대상 명확화를 위한 용어 정비(안 제8조)
- 5)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과 관련, 감면대상에 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준용하던 것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안 제11조)
- 6)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18. 8. 2. ~ 8. 22.)결과: 의견 있음.

내 용	반영 여부
<p>대학로 문화지구 내 제1종 권장시설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감면대상을 현행 해당용도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임대제외)에서 “사용(임대포함)”하는 부동산으로 변경 요구</p> <p>- 대학로 문화지구 내 공연장은 시세감면조례 제4조에 따른 공연장보다 많은 혜택 필요</p>	<p>미반영</p> <p>(현재 대학로 문화지구 내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된 부동산은 공연장 및 미관건축물로서, “인사동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등 다른 감면대상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p>
<p>한옥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감면 신설 요구</p> <p>- 자치구인 종로구와 성북구는 한옥에 대하여 구세감면조례로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므로 시세인 재산세 도시지역분도 감면 필요</p>	<p>미반영</p> <p>(이미 등록한옥에 보조·용자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구세에 더하여 시세를 감면하는 것은 과잉 혜택으로 볼 수 있으며, 자치구에서도 한옥이 있는 10개구 중 2개구만이 각 다른 기준으로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감면도입 시 시-구간 및 구 상호간 차별 문제 발생)</p>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시세의 감면규정 적용시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조항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현행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실효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될 경우 조례 상 감면을 신설하며, 기타 인용조례 용어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을 위하여나 특정 지역의 개발, 특정사업·시설의 지원을 위해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음.¹⁾

- 동 조례는 3년 주기의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는바, 그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되므로 2019년부터 적용될 감면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용시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 동 개정조례안은 14개 조항 중 현행 조례 제3조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을 삭제하고, 9개의 감면 적용시한을 3년으로 하여 조항별로 규정하며, 4개의 조항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기한을 규정하여 개정안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음.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감면대상별 감면세목 및 감면기간 개요〉

(단위 : 백만원)

연번	감 면 조 항	도입 연도	감면세목(율)	감면일몰 연장여부
1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1990	취득세·자동차세(100)	연장 (3년)
2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1993	취득세(20), 도시지역(50)	삭제
3	공연장에 대한 감면	2008	취득세·도시지역·지역자원 (100)	연장 (3년)
4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2004	취득세·도시지역(50)	연장 (3년)
5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율·감면기간 위임	1999	취득세(100)	연장 (미규정)
6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1998	취득세(50)	연장 (3년)
7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1977	도시지역·지역자원(100)	연장 (3년)
8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2004	취득세·도시지역·지역자원 (100)	연장 (3년)
9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2013	취득세·법인지방소득세(50)	연장 (3년)
10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2011	취득세(100)	연장 (3년)
11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추가 감면율 위임	2016	취득세(25~15)	연장 (미규정)
12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	도시지역(100)	신설 (3년)
13	서울특별시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 ※ 자치구에서 구(區)분 재산세를 감면할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도 동일하게 감면	2008	자치구 재산세 감면을 적용	연장 (미규정)
14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액 위임	2011	150원 또는 500원	연장 (미규정)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본 조례의 감면규모는 다음의 표와 같으며, 감면 실익이 미미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최근 급격히 감면규모가 늘어난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적정성 및 타당성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3년('15~'17) 조문별 감면규모 〉

연번	감 면 대 상	'15년 감면액 (백만원)	'16년 감면액 (백만원)	'17년 감면액 (백만원)
	합계	1,900	2,725	5,953
1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3)	186	161	135
2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58	54	59
3	공연장에 대한 감면(§4)	598	197	376
4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5)	108	723	27
5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6)	3	-	-
6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7)	208	337	168
7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8)	-	-	-
8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9)	31	25	27
9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10)	-	-	-
10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11)	6	-	6
11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12)	-	662	4,506
12	서울특별시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14)	646	441	512
13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15)	56	125	137

-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감면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22억원 정도의 출연금을 주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아닌 ‘서울시립대학교 조세재정연구소’에 연구 용역이 아닌 자문형식으로 자문비(60만원)만 제공하고 분석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심도있는 감면 타당성을 살펴보지 않고 형식적으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 및 신설하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향후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에 감면 대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일몰제의 도입 취지를 살려나가는 재무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시세감면조례 상 감면 신설 및 연장 관련 조세전문기관 분석평가 개요〉

○ 대 상

조 항	대 상
제4조	공연장에 대한 감면
제15조	서울특별시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
신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조문에 대하여 분석·평가

- 내 용 : 감면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 연장 적정성 분석·평가
- 기 관 : 서울시립대학교 조세재정연구소
- 검토 결과 : 감면연장(2건) 및 감면신설(1건) 모두 적정

구 분	연장 및 신설의 적정성	검토의견
공연장에 대한 감면(제4조) (연장)	적정함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문화시설이 더욱 필요한 상황에서, 문화시설인 공연장에 현행 감면규정의 연장이 필요함
서울특별시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제15조) (연장)	적정함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해소에 이바지하고 있는 재산세공동과세운명을 위한 보완규정으로 현행 감면규정의 연장이 필요함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신설)	적정함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도시자연공원의 확보가 필요하기에,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규정의 신설이 필요함

○ 예산 및 지출방법

- 소요예산 : 600,000원 ※ 부가세 미포함

▶ 예산과목 : 재무국 세제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법률지문료 준용(건당 20만원)

○ 지출방법 : 서울시립대학교 조세재정연구소 계좌로 입금조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②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해당 조례안의 지방세 감면 조문별로 그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기관이나 법인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학회 등 법인
4. 조세 관련 교육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조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이 2명 이상 속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조문별 개정 개요

1)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2조 신설)

- 안 제2조는 감면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령」 상의 용어임을 명확히 하여 조례에 대한 용어의 명확한 해석을 위해 ‘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조항을 신설하였음(안 제2조 신설).

	현 행('18)	개 정 안('19~)
신설 ⇨ 제2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신 설 〉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지방세특례제 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3년 연장(안 제3조)

- 안 제3조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를 3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 감면 규모는 연간 1억6천만원 수준이며,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부양가족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장애인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조 항	현 행('18)	개 정 안('19~)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

조 항	현 행('18)	개 정 안('19~)
<p style="text-align: center;">조문 이동 3조</p>	<p>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②~④ (생 략)</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별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p> <p>②~④(현행과 같음)</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 기존 부칙에 있던 감면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개별조문에 감면적용기한을 규정

감면개요

- 대 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
- 감면물건 :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동차
- 감면세목(감면율) : 취득세(면제), 자동차세(면제)
- 감면시행 : '90. 1. 1
- 감면실적(최근3년)

(단위 : 백만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추계)
감면액	186	161	135	161

▶ '18년(추계) 계산 : '15~'17년 3개년 감면 평균액

3)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폐지(현행 제3조 삭제)

-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20%)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50%) 감면에 대하여 위임 근거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38④)상 감면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받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이 개정 진행 중에 있는바, 법령이 개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례상 감면을 미리 폐지할 것이 아니라 향후 법 개정 결과를 감안하여 본 조례 내용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조 항	현 행('18)	개 정 안('19~)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삭제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8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 득세의 경감률: 100분의 20 2.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 른 재산세로 한정한다)의 경감률: 100분 의 50	<삭 제>

※ 위임 근거법인 지특법(§38④) 상 감면적용기한이 '18.12.31. 종료됨에 따라 삭제

□ 감면개요

- 시 행 : '93. 7. 3
- 대 상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함)
- 감면물건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세목(감면율) : 취득세(20%), 재산세 도시지역분(50%)
- 감면실적(최근3년)

(단위 : 백만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추계)
감면액	58	54	59	57

▶ '18년(추계) 계산 : '15~'17년 3개년 감면 평균액

4) 공연장에 대한 감면 3년 연장(안 제4조)

- 안 제4조는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면제) 세제 감면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 감면규모는 연간 3억 9천만원 수준으로, 재무국은 공연장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시민의 문화 혜택 확산을 위하여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조 항	현 행('18)	개 정 안('19~)
제4조 (공연장에 대한 감면)	<p>①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법 제2조 제1항제8호의 “직접 사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추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①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공연장 외의 용도로 겸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부동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추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감면기한 3년 연장(감면기한 본문에 규정)

※ 다른법령등과의 관계(§2)를 신설함에 따라 “직접사용”용어에 대한 정의규정 삭제

감면개요

- 대 상 :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취득한 자
- 감면물건 :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세목(감면율) : 취득세·재산세 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면제)
- 감면시행 : '08. 7. 30
- 감면실적(최근3년)

(단위 : 백만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추계)
감면액	598	197	376	390

▶ '18년(추계) 계산 : '15~'17년 3개년 감면 평균액

5)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3년 연장(안 제5조)

- 안 제5조는 인사동과 대학로 문화지구 안에서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50%)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50%) 감면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감면규모는 연간 2억 9천만원 수준으로 인사동과 대학로 문화지구 육성을 위한 유인책과 아울러 비문화업종으로의 영업허가 제한에 따른 기회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감면하는 사항으로, 세제경감을 통해 기존 권장시설을 존속시키고, 신규 권장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신촌 홍대입구 등 문화활동이 활발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한 중장기적이고 균형적인 세제 감면 제도 운영에 대한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조 항	현 행('18)	개 정 안('19~)
<p>제5조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p>	<p>①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인사동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②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대학로 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승인된 관리계획에 따라 제1종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p>	<p>①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인사동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간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②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대학로 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승인된 관리계획에 따라 제1종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지방세법」</p>

조 항	현 행('18)	개 정 안('19~)
	<p>간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다.</p> <p>1.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p> <p>2.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p>	<p>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부동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다.</p> <p>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p> <p>2. 해당 용도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p>

감면개요

- 감면물건 : 인사동과 대학로 문화지구 안에서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세목(감면율) : 취득세(50%), 재산세 도시지역분(50%)
- 감면시행 : '04. 5. 25(인사동), '06. 5. 4(대학로)
- 감면실적(최근3년)

(단위 : 백만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추계)
감면액	108	723	27	286

▶ '18년(추계) 계산 : '15~'17년 3개년 감면 평균액

- 한편, 입법의견으로 대학교 문화지구 내 공연장은 안 제4조에 따른 공연장보다 많은 혜택이 필요하다는 입법 의견이 있었으나, 현재 대학로 문화지구 내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된 부동산은 공연장 및 미관건축물로서, “인사동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등 다른 감면대상과의 형평성 문제로 반영하지 않았음.

〈입법 의견〉

내 용	반영 여부
<p>대학로 문화지구 내 제1종 권장시설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감면대상을 현행 해당용도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임대제외)에서 “사용(임대포함)”하는 부동산으로 변경 요구</p> <p>- 대학로 문화지구 내 공연장은 시세감면조례 제4조에 따른 공연장보다 많은 혜택 필요</p>	<p>미반영</p> <p>(현재 대학로 문화지구 내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된 부동산은 공연장 및 미관건축물로서, “인사동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등 다른 감면대상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p>

6)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3년 연장(안 제6조)

- 안 제6조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10년간 취득세를 면제하고 5년간 50%를 면제하여 왔으며, 지속적인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통한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해 감면을 3년 연장하고자 하나, 최근 3년간 감면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감면 존치의 실효적 의미가 있는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조 항	현 행('18)	개 정 안('19~)
제7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 조문 이동 6조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5년간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5년간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단서조항 삭제>

※ 추정규정 등은 위임 근거법인 조특법에 따르면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 규정

감면개요

- 시 행 : '99. 3. 20
- 감면물건 :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재산
- 감면세목(감면율) : 취득세(10년간 면제, 그 다음 5년간 50%)
- 감면실적(최근3년) (단위 : 백만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추계)
감면액	3	-	-	1

7)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3년 연장(안 제7조)

- 안 제7조는 준공업지역내 도시형 공장 신·증설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의 50%를 감면하여 왔으며, 이를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 감면 규모는 연간 2억 4천만원 수준이며,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 이전함에 따른 지역경제의 공동화 현상 방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행 감면을 유지 및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최근 3년간 준공업 지역에 상업시설이 확장되고 있는바, 도시형 공장에 대한 유인 효과가 충분한 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조 항	현 행('18)	개 정 안('19~)
<p>제8조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 조문 이동 7조</p>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 지역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공장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정한다.</p>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 지역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정한다.</p> <p>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공장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p>

※ 감면기한 3년 연장(감면기한 본문에 규정) 및 단서에 “호”를 추가함

감면개요

- 감면물건 :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 신·증설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 감면세목(감면율) : 취득세(50%)
- 감면시행 : '98. 4. 30
- 감면실적(최근3년) (단위 : 백만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추계)
감면액	208	337	168	238

▶ '18년(추계) 계산 : '15~'17년 3개년 감면 평균액

8)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8조)

- 안 제8조는 도시정비사업에 따라 철거되는 기존(특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민의 생활안정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를 3년간 연장하고자 하나, 감면실적이 전혀 없는 사항으로써, 감면 준치의 실익이 있는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조 항	현 행	개 정 안
<p>제9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조문 이동 8조</p>	<p>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p>	<p>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이하 “특정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p> <p>② 특정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또는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된 후 해당 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p>

※ 감면기한 3년 연장(감면기한 본문에 규정)

※ 문구 정비(인용조례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사항 반영)

감면개요

- 감면물건 : 도시정비사업에 따라 철거되는 기존(특정)무허가 건축물
- 감면세목(감면율) : 재산세 도시지역분(면제), 지역자원시설세(면제)
- 감면시행 : '77. 11. 8
- 감면실적(최근3년) : 실적 없음

9)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3년 연장(안 제9조)

- 안 제9조는 전통시장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면제를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 재래시장의 노후된 공용상업기반시설(아케이드 등)을 개선하여 전통시장의 낙후된 시설과 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영세상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시장 이용제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연간 감면 규모가 2천 7백만원에 머문다는 점에서 감면 실익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조항	현행('18)	개정안('19~)
제11조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 조문 이동 9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보조금이 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감면기한 3년 연장(감면기한 본문에 규정) 및 단서에 “호”를 추가함.

감면개요

- 감면물건 : 전통시장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취득하는 건축물
- 감면세목(감면율) : 취득세·재산세 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감면시행 : '04. 5. 25
- 감면실적(최근3년)

(단위 : 백만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추계)
감면액	31	25	27	27

▶ '18년(추계) 계산 : '15~'17년 3개년 감면 평균액

10)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3년 연장(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50%) 및 법인지방소득세(50%) 감면을 3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 50% 감면 및 재산세 25% 경감과 법인등기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하는 사회적 기업 등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감면 연장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나, 최근 3년간 감면 실적이 없다는 점에서 실익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조 항	현 행('18)	개 정 안('19~)
<p>제12조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 조문 이동 10조</p>	<p>①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②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제1항 각 호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합병·분할은 제외한다) 	<p>①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p> <p>1.~3.(현행과 같음)</p> <p>②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제1항 각 호의 해산사유(합병·분할은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

※ 감면기한 3년 연장(감면기한 본문에 규정)

□ 감면개요

○ 감면대상 및 세목(감면율)

- 사회적 협동조합*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50%)
-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 법인지방소득세(50%)

○ 감면시행 : '13. 8. 1.(취득세), '17.1.1(법인지방소득세)

○ 감면실적(최근3년) (단위 : 백만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추계)
감면액	-	-	-	2*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신설('17.1월) 후 최초 사업연도 개시분에 대한 감면액 발생

11)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3년 연장(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2008년 3월 11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 항	현 행('18)	개 정 안('19~)
제13조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 조문 이동 11조	2008년 3월 11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u>같은 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또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 74조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준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u>	2008년 3월 11일 이전에 <u>중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u> 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u>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u> <u>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법 제7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u>

		<p>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p> <p>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p>
--	--	--

※ 감면기한 3년 연장(감면기한 본문에 규정)

※ 조례가 감면내용으로 준용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3항제4호 및 제5호가 2018.12.31.자로 만료되므로 감면내용을 조례에 직접 규정

감면개요

○ 감면물건

- '08.3.1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자가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세목(감면율) : 취득세 (면제)

○ 감면시행 : '11. 7. 28

○ 감면실적(최근3년) (단위 : 백만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추계)
감면액	6	-	6	4

- 2011년 1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이 이관됨에 따라 종전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부칙으로 보호받던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사이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들이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008년 3월 12일 「시세감면조례」 개정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조합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신뢰보호 차원에서 감면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08.3.12. 「시세감면조례」 개정으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취득세 감면대상 선정 시점을 종전 “사업시행인가일”에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앞당겨 변경하면서, 조례 부칙에 조례 시행(08.3.12) 이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부터 적용토록 함

- 다만, 법 준용을 통하여 감면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여 감면해오던 법규정이 금년 말 일몰됨에 따라, 조례에 직접 규정하면서 상속인에 대한 감면 사안이 조례안으로 옮겨오지 않은 것이 확인된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조례에 상속인에 대한 감면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12)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현행 유지(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2016년부터 산업단지입주기업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 및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신증축 25%, 대수선 15%) 감면 조항을 제12조로 이동하려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2019년 까지 유지하고, 조례로는 감면율만 위임되어 있는 규정임.
- 2017년 감면규모는 45억원 수준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위임에 따른 감면은 분석·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어(제4조) 본 감면 규정에 분석·평가 자료는 없어 그 타당성을 추정하기가 쉽지 않으나, 산업단지가 산업집적 및 일자리 공간으로 지역경제 성장의 거점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면 연장을 통해 기업들의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조 항	현 행('18)	개 정 안('19~)
제14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조문 이동 12조	법 제78조제8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의 경감률 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 다. 2.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의 경감률 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15로 한 다.	법 제78조제8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 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현행과 같음)

□ 감면 개요

- 시 행 : '16.1.7.
- 감면물건 : 산업단지입주기업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 및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세목(추가 감면율) : 취득세(신증축 25%, 대수선 15%)
- 감면실적(최근3년) (단위 : 백만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추계)
감면액	-	662	4,506	2,584

▶ '18년(추계) 계산 : '16~'17년 2개년 감면 평균액

13)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13조 신설)

- 안 제13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도시계획이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²⁾이었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감면(100%)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 행('18)	개 정 안('19~)
신설 ⇒ 제13조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감면)	< 신 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공원을 말함.

□ 감면신설 개요

○ 감면물건

- 도시계획시설 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될 경우

○ 감면세목(감면율) : 재산세 도시지역분(100%)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감면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추계)*
감면액	합계	3,918	3,953	4,329	4,067
	시세	1,612	1,600	1,714	1,642
	구세	2,306	2,353	2,615	2,425

▶ '18년 추계 : '15~'17년 3개년 감면 평균액

-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 받아 왔으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더 이상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이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도시공원실효제(일몰제)'란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후 20년 동안(결정고시일 기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해당 도시공원에 대한 지정 효력을 잃게 됨.

※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공원에 대하여 1999년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지정된 후 20년 동안)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97헌바26, 1999.10.21.)함에 따라, '도시공원 실효제'가 도입되었음.

※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1일자로 서울시내 116개 도시공원, 총 95.6km²가 일제히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있음.

※ 서울시 도시공원의 83%,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의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것임.

구분	개소수	면적(km ²)				비고
		계	사유지	국유지	공유지	
계	116	95.68	40.28	35.914	19.493	
도시자연공원	20	71.707	30.14	31.357	10.210	
근린공원	77	23.263	9.80	4.521	8.942	
주제공원등	19	0.71	0.333	0.036	0.341	

- 2020년 7월 1일자로 관내 도시공원이 대거 상실될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도시공원’에 대한 감면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도시공원’에서 ‘도시지역공원구역’으로 변경되는 토지에 대하여 조례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시에 국한된 사안으로 전국적 법적 적용에 한계가 있음.

- 다만, 기존의 세제 감면 연장으로 그동안 침해된 재산권에 대한 반발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지는 의문이며, 지방채 발행을 통한 공원부지의 매입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14) 서울특별시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 조문 이동(안 제14조)

- 안 제14조는 2008년부터 도입된 재산세 공공과세 제도에 따라, 자치구 감면 조례로 감면할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도 동일하게 감면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특별시분 재산세 :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해 자치구세인 재산세 징수액의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하여 자치구에 균등 교부

조 문	현 행('18)	개 정 안('19~)
제15조 (서울특별시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 ⇨ 조문 이동 14조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감면은 해당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소재하는 자치구의 구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감면은 해당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소재하는 자치구의 구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감면개요

- 감면내용 : 해당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소재하는 자치구의 구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해 자치구세인 재산세 징수액의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하여 자치구에 균등 교부

- 감면세목(감면율) : 특별시분재산세 (자치구 감면조례에서 규정한 감면율)

○ 감면시행 : '08. 3. 12

○ 감면실적(최근3년)

(단위 : 백만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추계)
감면액	646	441	512	533

▶ '18년(추계) 계산 : '15~'17년 3개년 감면 평균액

15) 자동계좌이체에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현행 유지(안 제15조)

- 안 제15조는 자동이체납부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세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절감되는 징세비용(고지서 제작, 송달 비용)에 대하여 일정액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전자고지·납부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감면제도를 유지하려는 것임.

	현 행('18)	개 정 안('19~)
<p>제16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조문 이동 15조</p>	<p>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p>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제 전의 세액으로 한다. 	<p>< 현행과 같음 ></p>

감면개요

○ 시 행 : '11. 7. 28

○ 감면내용 : 전자송달 방식 및 자동이체(계좌,카드) 방식으로 납부한 자

○ 감면세목(감면율) : 부과고지 전 세목(고지서 1장당 150~500원 세액공제)

○ 감면실적(최근3년)

(단위 : 백만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추계)
감면액	56	125	137	106

▶ '18년(추계) 계산 : '15~'17년 3개년 감면 평균액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 개정 사항(2018.1.1.시행)>

개정 전	개정 후														
<p><자동이체납부 등 세액공제 법92조의2> ○ (공제액) 법정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함</p> <table border="1"> <tr> <th align="center" colspan="2">고지서 1장당 공제 가능 범위</th> </tr> <tr> <td>자동계좌이체</td> <td align="center">150원~500원</td> </tr> <tr> <td>전자송달+자동계좌이체</td> <td align="center">300원~1000원</td> </tr> </table>	고지서 1장당 공제 가능 범위		자동계좌이체	150원~500원	전자송달+자동계좌이체	300원~1000원	<p>☞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시 공제 추가 ○ (공제액) 법정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함</p> <table border="1"> <tr> <th align="center" colspan="2">고지서 1장당 공제 가능 범위</th> </tr> <tr> <td>자동이체</td> <td align="center">150원~500원</td> </tr> <tr> <td>전자송달</td> <td align="center">150원~500원</td> </tr> <tr> <td>전자송달+자동이체</td> <td align="center">300원~1000원</td> </tr> </table> <p>* 자동이체: 신용카드 자동이체 or 계좌 자동이체</p>	고지서 1장당 공제 가능 범위		자동이체	150원~500원	전자송달	150원~500원	전자송달+자동이체	300원~1000원
고지서 1장당 공제 가능 범위															
자동계좌이체	150원~500원														
전자송달+자동계좌이체	300원~1000원														
고지서 1장당 공제 가능 범위															
자동이체	150원~500원														
전자송달	150원~500원														
전자송달+자동이체	300원~1000원														

- 감면규모는 연간 1억원 수준이며, 재무국은 자동이체납부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감면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현재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7년부터 ‘전자납세자’에게 실비보상의 성격으로 건당 500원에서 1,000원까지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바, 동일 사안에 대하여 세액공제에 더하여 마일리지를 중복 지원하는 것이 과도한 혜택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세액공제와 마일리지 지원 비교>

(단위 : 원)

구 분	세액공제	마일리지 적립		총 혜택 (공제+마일리지)
		납부세액 30만원 미만	납부세액 30만원 이상	
전자송달 + 자동이체납부	500	500		1,000
전자송달 + 자동이체 외 전자납부	150	500	1,000	650/1,150
자동이체납부	150	-		-

※ 2017년 서울시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사업 적립 지원액 : 927,683건, 552백만원

※ 현재 서울시만 마일리지 제도 운영 중. 부산시의 경우 법 개정예 따라 금년부터 전자고지마일리지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신규 적립 없이 기 적립된 마일리지 소멸될 때까지만 존치

출처 : <https://etax.busan.go.kr/>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폐지안은 존치 후 상위법 개정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기존 감면 대상자 중 상속인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개정안에 상속인을 포함하여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폐지안 존치(현행 제3조).
- 감면 대상자에 상속인을 포함(안 제11조 제1호).

8.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199
----------	------------

제안연월일 : 2018년 11월 21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폐지안은 존치 후 상위법 개정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기존 감면 대상자 중 상속인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개정안에 상속인을 포함하여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폐지안 존치(현행 제3조).
- 감면 대상자에 상속인을 포함(안 제11조 제1호).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조 번호를 각각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8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 100분의 20
2.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로 한정한다)의 경감률: 100분의 50

안 제11조는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부동산의 소유자”를 “부동산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안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 조 번호를 각각 제13조부터 제24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p> <p>1. 법 제38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 100분의 20</p> <p>2.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로 한정한다)의 경감률: 100분의 50</p>
<p>제4조(공연장에 대한 감면) ① --- -----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 기준일 현재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공연장 외의 용도로 겸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부동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다.</p> <p>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연장</p>	<p>제5조(개정안 제4조와 같음)</p>

<p>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p> <p>2.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p>	
<p>제5조(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①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인사동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②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대학로 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승인된 관리계획에 따라 제1종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p>	<p>제6조(개정안 제5조와 같음)</p>

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부동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제7조(개정안 제6조와 같음)

<p>다음 5년간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p>	
<p>제7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 지역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공장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제8조(개정안 제7조와 같음)</p>
<p>제8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이하 “특정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p>	<p>제9조(개정안 제8조와 같음)</p>

<p>일까지 면제한다.</p> <p>② 특정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또는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된 후 해당 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p>	
<p>제9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 준일 현재 해당 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제10조(개정안 제9조와 같음)</p>

제10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①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법인지방

제11조(개정안 제10조와 같음)

<p>소득세를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제1항 각호의 해산사유(합병·분할은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 	
<p>제11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p> <p>2008년 3월 11일 이전에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 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현재 <u>부동산의 소유자</u>가 법 제7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p>제12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p> <p>2008년 3월 11일 이전에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 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현재 <u>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가 법 제7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

<p>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p> <p>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p>	<p>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p> <p>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p>
<p>제12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8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 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p> <p>2.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15로 한다</p>	<p>제13조(개정안 제12조와 같음)</p>
<p>제13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p>	<p>제14조(개정안 제13조와 같음)</p>

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4조 (서울특별시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 「지방세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감면은 해당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소재하는 자치구의 구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개정안 제14조와 같음)
제15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생략)	제16조 (개정안 제15조와 같음)
제16조 (사무처리의 위임) (생략)	제17조 (개정안 제16조와 같음)
제17조 (감면 제외대상) (생략).	제18조 (개정안 제17조와 같음)
제18조 (감면신청 등) (생략)	제19조 (개정안 제18조와 같음)
제19조 (감면자료의 제출) (생략)	제20조 (개정안 제19조와 같음)
제20조 (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생략)	제21조 (개정안 제20조와 같음)
제21조 (중복감면의 배제) (생략)	제22조 (개정안 제21조와 같음)
제22조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생략)	제23조 (개정안 제22조와 같음)
제23조 (직접 사용의 범위) 토지에 대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4조 (개정안 제23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그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8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 100분의 20
2.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로 한정한다)의 경감률: 100분의 50

제5조(공연장에 대한 감면) ①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공연장 외의 용도로 겸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부동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6조(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①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인사동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대학로 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승인된 관리계획에 따라 제1종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부동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7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간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5년간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제8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 지역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공장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이하 “특정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특정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또는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된 후 해당 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분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0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①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

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한다.

1.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제1항 각 호의 해산사유(합병·분할은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2008년 3월 11일 이전에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최초 사업시행 계획인가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7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제13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8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2.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15로 한다.

제14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

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 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 「지방세기본법」 제9조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감면은 해당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소재하는 자치구의 구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2.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제 전의 세액으로 한다.

제17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세 감면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1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9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2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 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법 제184조를 준용한다.

제21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20조제3항을 적용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다.

제2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에 따른다.

제23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취득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직접 사용의 범위) 토지에 대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 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